



2023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이용 제한 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 교육발전과 돌봄교실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학년도 초등돌봄교실 퇴실 규정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안전한 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초등돌봄교실 이용 제한 규정에 대한 근거

-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 (경기도 교육청)
- 2023년 3월 중 환불 및 퇴실 규정 안내 가정통신문

2. 초등돌봄교실 이용 제한 규정에 대한 필요성

돌봄교실에서 문제 행동 및 생활규칙 위반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의 이용환경을 방해하고, 정신적·신체적인 피해를 주며 돌봄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동이 지속될 경우, 적절한 제재를 통해 돌봄교실의 공동생활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제한(퇴실) 규정이 필요함.

3. 제재 기준

- 1) 돌봄교실 참여학생이 '결석 또는 조퇴'시에는 보호자가 문자나 전화로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하며 무단불참(조퇴,결석)이 월(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퇴실조치 할 수 있습니다.** 퇴실 이후에는 1개월간 재입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돌봄교실 참여학생의 문제행위로 인하여 돌봄교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월(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1회 학생에게 경고, 바로 학부모에게 문자로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
2회 학생에게 경고, 학부모에게 문자 및 전화통화 상담
3회 학부모에게 전화통지로 이용제한 가능성 통지
- 3) 이후에 개선되지 않을 시 퇴실조치할 수 있습니다. 퇴실 이후에는 1개월간 재입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제행동기준

돌봄교실에서 생활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경고를 받습니다.

- 1) 친구들과 싸우거나 때리거나 욕을 하는 경우
- 친구들과 싸우거나 때리거나 욕하는 소리를 교사가 관찰했거나 친구들이 알려준 경우에 **경고 1회**
- 2) 수업을 방해하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특기성수 수업시간에 친구들 수업을 방해하며 큰 소리로 떠들고 돌아다니거나 기물을 만지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강사 선생님께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 **경고 1회**
- 3) 무단이탈 및 무단 불참하는 경우
- 하교 후 즉시 돌봄교실에 오지 않고 교문 밖으로 나가거나 운동장, 도서관에 있는 경우, 돌봄교실 불참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 **경고 1회**

2023년 10월 16일

외 북 초 등 학 교 장